

※ 사업자등록증상에 제조업이 있는 경우에만 고용주가 작성

<b>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</b>				
<b>대상자</b>	성 명		외 국 인 등록번호	
	취업기간		급여 (시급)	
	근무시간	평일 : <span style="margin-left: 100px;">토·일요일 :</span>		
	근무내용 (구체적 기재)			
<b>취업 예정 근무처</b>	업 체 명			
	사 업 자 등록번호		업종	
	고 용 주 성 명		전화 번호	
<p>위 유학생을 시간제 취업으로 고용함에 있어 위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며, 제조업 등 허가된 이외의 업종에 근로하게 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 . . 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고용주 성명 : <span style="margin-left: 100px;">(서명)</span></p> <p>※ 시간제취업허가 허용시간은 어학연수생은 주당 20시간, 학부과정은 주당 20시간 이내(인증 대학은 25시간), 석박사과정은 주당 30 시간 이내임.</p>				
<p>○ ○ 출입국관리사무소(출장소)장 귀하</p>				
<p>붙임 : 고용주 신분증 사본 1부.</p>				